

의안번호	제 52 호
의결년월일	1999. 9. 28.
의결사항	월안가결

발의자	류정근 의원외3인
제출 년월일	1999. 9. 21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

수신 의 장

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

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
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

붙임 안건1부. 끝.

발 의 자 : 류 경 은 (원)

(찬 성 의 원 서 명 : 붙 임 참 조)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견

■ 제안설명

- 제안설명을 드립니다.
- 제87회 보은군의회의임시회에서 심의할 '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(안)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견을 제안합니다.

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, 보은군의회의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분야, 사회복지행정 및 개발행정분야, 산업행정분야등 3개 소위원회로(붙임참조)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의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합니다. 감사합니다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

■ 제안이유

-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
- 99년도 제2회 일반및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

■ 내 용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: 10명(의장 제외)
- 3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 : 1차심의
(일반행정분야, 사회복지및개발행정분야, 산업행정분야)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: 종합심의



제8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표

위원장 : 김인수의원

간사 : 오규택의원

구 분	담 당 실 과	소위원회 위원장	위 원
일반행정분야 (제1소위원회) 의 장 실	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 무 과 의회사무과	김 인 수 	김 연 정 유 병 국 송 인 옥
사회복지행정분야 및 개발행정분야 (제2소위원회) 의 원 실	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보 건 소 환경사업소 건 설 과	오 규 택	류 정 은 조 강 천
산업행정분야 (제3소위원회) 부의장실	농 정 과 문화관광산림과 농업기술센터	우 쾌 명	이 익 규 정 기 형

의안찬성의원서명

성명	서명	(인)
이익수		
송재철		
송인우		
		